기록 열람의 요건

요청할 경우 확인 서류

가능할 것임

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- 화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ů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화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보의 발급을
 -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1.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-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)
- 4. 화자의 신분증 사보 (화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
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, 가족관계증 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)
- 형사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 하면.

3. 화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)

-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,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, 수색
 -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(환자 본인 동의 불필요)
 - 위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그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음

- 화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화자에 관하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보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의 제축 받아야할 서류

- 입퇴원 및 외래내원 여부 같은 환자의 행적,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외에 진료과목, 처치내용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므로,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가「의료법」및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거하여 소제기가